

추가 장애 보험 (Supplemental Disability Benefits)

가입자가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가입자의 실제 급여가 사망 및 장애 보험(Death and Disability Plan)을 통해 지원 받는 장애 보험 금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장애 보험은 가입자에게 별도의 월 소득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사망 및 장애 플랜의 장애 혜택은 일반적으로 실제 급여의 60%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급여는 \$110,000입니다. 급여가 이 금액보다 증가하면 가사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증 장애가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상의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추가 장애 보험의 보장 범위

추가 장애 보험을 \$10,000 단위로 선택하면, \$110,000를 초과하는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려면 실제 급여 중 \$10,000 미만은 절삭하십시오. 해당 금액이 \$120,000* 이상이면 추가 장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급여가 \$12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추가 장애 보험에서 급여 전액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혜택 금액

이 추가 장애 보험에 가입한 경우, \$110,000*를 초과하는 실제 급여의 60%를 IRS 한도액인 \$285,000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IRS 한도액은 2019년은 \$280,000이고 2020년은 \$285,000입니다. 월 혜택 한도는 \$5,500입니다.

실제 급여가 \$125,000일 경우 보장 범위

\$110,000*	\$110,001 - \$120,000	\$120,001 - \$125,000
표준 장애 혜택을 통해 최고 월 \$5,500까지 급여의 60% 대체	추가 장애 보험으로 보장 받음; 플랜이 급여의 60% 대체	보장되지 않음. 보장 대상 급여 한도액: \$120,000 (\$125,000에서 \$10,000 미만을 절삭하면 \$120,000)

이 보험은 장애 혜택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조정이 없으며,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에 가입한 경우 \$110,000*를 초과하는 장애 혜택에 대해 연금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사역지에 파트 타임으로 복직하고, 파트 타임 수입과 결합된 혜택이 보장 대상 실제 급여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국은 이에 비례하여 추가 장애 보험을 삭감합니다.

추가 장애 보험은 가입자의 실질 급여 중 표준 장애 혜택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의 60%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질 급여 \$120,000 이상)

보험 가입

가입 대상자가 고용되어서 가입 자격이 되면 연금국이 가입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 가입자의 급여가 보험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출 만큼 증가하거나 (\$120,000 이상) 또는, 더 높은 보장 범위에 가입할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연금국이 가입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가입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추가 장애 보험 (Supplemental Disability Benefits)

보험 가입 자격 증명서 (Evidence of insurability)

처음으로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또는 더 높은 보장을 받을 자격이 될 만큼 사례비 인상을 받았을 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자비로 의학적 장애 검사(medical underwriting)를 받고, 보험 가입 자격 증명서(Evidence of Insurability, EOI)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장애 보험 가입이 승인되면, 기존의 건강상태 제외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를 적용하지 않고 제공됩니다.

현재는 초과 급여의 일부에 대해서 보장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더 많은 보장을 원할 경우, 더 높은 보장 범위에 가입할 때는 의학적 장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보장 범위 중 가장 높은 보장 범위에 가입하면, 기존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검사가 면제됩니다.

기존의 건강상태 (Pre-existing conditions)

추가 장애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2개월 전까지의 건강 상태를 뜻합니다. 처음 가입 자격이 주어졌을 때 가입을 했는데 기존의 건강상태때문에 가입 첫 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추가 장애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지불한 모든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비용

월 보험료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 등급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보험료에 대해서는 pensions.org에 접속해서서 **Benefits Guidance for members**에서 Supplemental disability benefits를 참고하거나 pensions.org에 있는 Disability Benefits booklet를 참고하십시오.

교회/고용기관은 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교회/고용기관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보장 보험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험료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세전 (pretax) 사례비로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보장 보험액에 대해 보험료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세후 (after tax) 사례비로 지불할 경우, 보장 보험액에 대해 보험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찬 목회자는 주택 수당을 사용하여 혜택의 과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추가 장애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pensions.org/members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로 전화하십시오.

중요 보장

일을 할 수 없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장애 혜택들은 장애를 겪는 기간 동안 월 소득을 제공합니다.

추가 보장

추가 장애 보험은 가입자의 급여를 표준 장애 혜택의 한도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가입

보장 가입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국이 가입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문서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플랜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플랜 문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pensions.org를 방문하거나 연금국에 800-773-7752 (800-PRESPLAN)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